



선 람	기 관 의 장

제1326호

2024. 3. 29. (금)



시화-철쭉



시조-갈매기



시목-느티나무

고 시

- 삼척시 고시 제2024-77호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2

공 고

- 삼척시 공고 제2024-520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 5
- 삼척시 공고 제2024-526호 삼척시 특별교통수당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9
- 삼척시 공고 제2024-528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 14
- 삼척시 공고 제2024-530호 삼척시 보건의료기관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17
- 삼척시 공고 제2024-537호 삼척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22
- 삼척시 공고 제2024-538호 삼척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34
- 삼척시 공고 제2024-546호 2024년 임도신설사업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57
- 삼척시 공고 제2024-551호 삼척시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59
- 삼척시 공고 제2024-555호 2024년 도시녹지관리원 모집 공고 ----- 75

공 람									
--------	--	--	--	--	--	--	--	--	--

삼척시 고시 제2024-77호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성내동 9-3번지 일원 죽서루공원의 공원조성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해당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3월 29일

삼척시장

가. 계획취지

-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 다목에 따른 기반시설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나. 도시관리계획(시설) 변경 조서

1) 공원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최근고시일)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2	죽서루 공원	역사 공원	성내동 9-3번지 일원	15,866	-	15,866	1981. 3. 16. (강원도고시 제84호)	자연녹지지역 (2020. 6. 19., 강원도-232)

2) 공원조성계획

구 분	면 적 (㎡)	구성비 (%)	건 축 물			공작물 (기)	비 고
			건축면적 (㎡)	연면적 (㎡)	층수 (층)		
총 계	15,866.00	100.0	686.41	686.41			
1. 도로 및 광장	2,446.99	15.4					
① 도로	808.57	5.1					
② 휴게광장	1,638.42	10.3					

구분	면적 (㎡)	구성비 (%)	건축물			공작물 (기)	비고
			건축면적 (㎡)	연면적 (㎡)	층수 (층)		
2. 조경시설		-					
① 파고라		-				1	
3. 휴양시설	75.17	0.4					
① 휴게소	75.17	0.4					
② 등의자		-				5	
③ 평의자		-				3	
④ 앞음벽		-				6.0m	
4. 교양시설	1,727.11	10.9	505.17	505.17			2동
① 죽서루	874.71	5.5	212.63	212.63	1		1동
② 삼척문화원	852.40	5.4	292.54	292.54	1		1동
5. 편의시설	3,484.51	21.9	181.24	181.24			4동
① 주차장	2,898.35	18.2					
② 매표소		-	71.02	71.02	1		1동
③ 화장실	214.40	1.3	62.00	62.00	1		1동
④ 화장실	371.76	2.4	31.04	31.04	1		1동
⑤ 해설사의집	-	-	17.18	17.18	1		1동
6. 관리시설	-	-					
① 안내판	-	-				2	
② 표지판	-	-				5	
③ 휴지통	-	-				3	
7. 녹지 및 기타	8,132.22	51.4					

■ 공원조성계획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도로 및 광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 면적 축소 - 면적: 1,065.00㎡ → 808.57㎡ (감 256.43㎡) 휴게광장(기존 1-2) 폐지: 1,103.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를 대비한 정비 고시(강원도 고시 제2020-232호, 2020. 6. 19.)에 따른 죽서루공원 제척 부지의 조성계획 폐지
-	운동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게이트볼장 폐지: 602.00㎡ 	
4	교양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삼장사 폐지: 1,605.14㎡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5	편익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실(기존 10-2, 3) 폐지 • 게이트볼장 관리소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를 대비한 정비 고시(강원도 고시 제2020-232호, 2020. 6. 19.)에 따른 죽서루공원 제척 부지의 조성계획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실⁴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371.76㎡ - 건축면적/연면적: 31.04㎡ • 해설사의집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면적/연면적: 17.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객 증가에 따른 편익시설 설치
7	녹지 및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21,125.13㎡ → 8,132.22㎡ (감 12,992.9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를 대비한 정비 고시(강원도 고시 제2020-232호, 2020. 6. 19.)에 따른 죽서루공원 제척 부지의 조성계획 폐지

다. 도시관리계획 도면 및 지형도면

- 삼척시청 도시과 비치 및 토지e음(<http://www.eum.go.kr>) 실음

라. 본 고시와 관계된 서류는 삼척시청 도시과(☎ 033-570-3876)에 비치하며, 일반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삼척시 공고 제2024-520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이 철거되었음에도 건축물대장이 말소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자 하나 소유자의 거소 또는 주소불명으로 말소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거 처분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1. 공고장소 : 삼척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 2. 공고기간 : 2024. 3. 22. ~ 2024. 4. 6. (15일간)
- 3. 말소(예정)일자 : 2024. 4. 8.
- 4. 공고내용

가.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나. 당사자	성명(명칭)	김 경 ○
	주 소 (대장상주소)	
1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건축물대장 철거(멸실)
	라. 처분하고한 내용	건축물대장 말소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근덕면 교곡리 146 주1 1층, 목조, 주택, 연면적(28.6㎡)
	마. 법적근거 및 조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나. 당사자	성명(명칭)	이 동 ○
	주 소 (대장상주소)	
2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건축물대장 철거(멸실)
	라. 처분하고한 내용	건축물대장 말소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근덕면 교곡리 145-1 주1 1층, 목조, 주택, 연면적(52.99㎡)
	마. 법적근거 및 조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5. 유의 사항

- 가. 청문 및 의견제출 기한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삼척시(청) 건축과 건축물관리팀(☎033-570-34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3. 22.

삼 척 시 장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하신 후에는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담당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청) 건축과 건축물관리팀
- 연 락 처 : 033)570-3459

삼척시 공고 제 2024- 526호

「삼척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6일

삼 척 시 장

1. 개정사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운행 중인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을 무료로 함으로써, 이용자의 이동권 향상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 무료화(안 제13조)

- 무료이용 횟수: 2회/1일(편도기준), 2회 초과부터 유료적용
- 무료범위: 관내 및 관외

3. 입법예고기간: 2024. 3. 26. ~ 4. 16.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은 2024년 4월 16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장(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의견(참고사항 등)
- 라.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교통과
 - 전화: 033-570-3939

5. 그 밖의 사항

이 조례 개정안은 삼척시 홈페이지(<http://samcheok.go.kr>) 입법/공고/고시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붙임 1. 삼척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1부. 끝.

[붙임 1]

삼척시 조례 제 호

삼척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이용요금”을 “이용요금(이하 “이용요금”이라 한다)”으로, “한다”를 “하며, 1일 2회의 이용에 한하여 무료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은”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용요금을 유료로 하는 경우에는”으로, “다른 요금”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금을”을 “이용요금과 그 세부 사항에 관하여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으로, “게시”를 “공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3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은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한다.</p> <p>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금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금 기준을 즉시 시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빠른 시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요금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은 공지 등을 통해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p> <p>1. 2. (생략)</p> <p>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금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용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제13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 ① ----- 이용요금(이하 "이용요금"이라 한다)----- 하며, 1일 2회의 이용에 한하여 무료로 한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용요금을 유료로 하는 경우에는 ----- 따른 -----, <단서 삭제></p> <p>1. 2. (현행과 같음)</p> <p>③ ---- 이용요금과 그 세부 사항에 관하여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 공지-----, -----.</p>

[붙임 2]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자치법규명:

▣ 의견제출자:

개정안	검토의견	
	수정안	검토사유

삼척시 공고 제2024-528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이 철거되었음에도 건축물대장이 말소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자 하나 소유자의 거소 또는 주소불명으로 말소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거 처분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1. 공고장소 : 삼척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 2. 공고기간 : 2024. 3. 25. ~ 2024. 4. 9. (15일간)
- 3. 말소(예정)일자 : 2024. 4. 10.
- 4. 공고내용

가.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나. 당사자	성명(명칭)	박민 ○
	주소 (대장상주소)	139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건축물대장 철거(멸실)
1	라. 처분하고한 내용	건축물대장 말소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원덕읍 옥원리 139-1 주1 1층, 시멘트블록조, 축사, 연면적(223.08㎡)
	마. 법적근거 및 조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5. 유의 사항

- 가. 청문 및 의견제출 기한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삼척시(청) 건축과 건축물관리팀(☎033-570-34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3. 25.

삼 척 시 장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하신 후에는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담당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청) 건축과 건축물관리팀
- 연 락 처 : 033)570-3459

삼척시 공고 제2024-530호

「삼척시 보건의료기관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6일

삼척시장

삼척시 보건의료기관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가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검진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시행 2024. 11. 23)됨에 따라 해당 수수료를 명시하고 아울러, 운전면허신체검사서 발급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2. 주요내용

- 가. 제증명 발급 수수료 항목 신설 및 정비(안 별표 1)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 명시
(현행)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서 정한 수수료
(개정) 3,000원
 - 운전면허신체검사서 발급 수수료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장(보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및 문의처

- 1) 주소: (우)25920 삼척시 중앙시장길 53-6, 삼척시보건소 보건정책과
- 2) 전화: 033-570-4623
- 3) 팩스: 033-570-4169

4. 그 밖의 사항

이 조례안은 삼척시 홈페이지(<http://samcheok.go.kr>) 입법/공고/고시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붙임 1. 삼척시 보건의료기관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1부. 끝.

[붙임 1]

**삼척시 보건의료기관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보건의료기관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2호의 수수료는 20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증명 발급 수수료(제7조 관련)

구분	기준	수수료	비고
1. 진단서	1통	500원	검사료 별도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요양 급여비용 기준)
2.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1통	3,000원	
3. 운전면허신체검사서	1통	건강보험요양 급여비용총액 (1회 방문당 수가)	
4. 기발급 제증명 추가 발급	1통	300원	
5. 원본 발급 시 초과 발급	1통	100원	

[붙임 2]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자치법규명 : 「삼척시 보건의료기관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 의견제출자 :

개정안	검토의견	
	수정안	검토사유

삼척시 공고 제2024-537호

「삼척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6일

삼척시장

삼척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삼척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 사항을 시행규칙에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불부합 해소를 행정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누락된 직속기관을 포함하고, 적용하는 사무처리 규정을 명확히 표기

(안 제3조 제4항)

나. 조례의 명확성을 위하여 자구 및 용어 수정(안 제4조~제5조)

다. 근무시간 외에도 관수자가 공인을 이중캐비닛 또는 금고에 보관하는 것을 명시하는 「삼척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시행규칙에 불필요한 내용 삭제(안 제6조 제1항~제3항)

3. 의견제출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4월 15일까지 작성하여 삼척시장(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라. 의견제출 및 문의처
 - 1) 주소 : (우)25914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총무과
 - 2) 전화 : 033-570-3232
 - 3) 팩스 : 033-570-3133

4. 그 밖의 사항

이 규칙안은 삼척시 홈페이지(<http://samcheok.go.kr>) 입법 / 공고 / 고시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붙임 1. 삼척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1부. 끝.

[붙임 1]

삼척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삼척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공인관수자의 임명)”을 “(공인관수자)”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류별 공인의 관수자를 별표와 같이 임명한다”를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인의 종류별 관수자는 별표와 같다”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인·허가증명 기타”를 “인가·허가, 증명 등과 그 밖의”로, “계인을 날인하고 시행문이 2매 이상일 때에는 직인”을 “직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민원실전용공인은 민원서류에만 날인하고, 직속기관과 사업소, 읍·면·동 전용 시장인은 삼척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과 삼척시 사무위임 규칙에 따른 사항에 한하여 날인한다.

제4조제1항 중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 기타”를 “사용 빈도가 잦은 민원서류와 그 밖의”로, “직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사용”을 “사전에 공인을 날인하거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를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인영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로, “받아 인영 인쇄 사용신청을 하여야”를 “받아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2호서식의”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으로, “비치하고”를 “비치하여”로, “기록 유지하여”를 “기록·유지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처리과장이 지명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하여 인영사고”를 “문서처리과장이 미리 지명한 공무원이 인쇄 현장에 입회하여 인영 사고”로, “감시토록 하며”를 “감시하고”로, “회수하여”를 “회수한 후”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직인날인의 기록유지)”를 “(직인의 날인 기록유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경우의 직인날인 시”를 “문서에 직인을 날인하는 경우”로 한다.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인 관수자

기관별	공 인 의 종 류	관 수 자
본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 직인 · 시계인 · 시철인 · 시장 직인(민원실전용) · 시계인(민원실전용) · 시장 직인(민원실인증기전용1호) · 시장 직인(민원실인증기전용2호) · 시장 직인(민원실인증기전용4호) · 시장 직인(민원실인증기전용6호) · 시장 직인(민원실인증기전용7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무과 서무팀장 · 총무과 서무팀장 · 총무과 서무팀장 · 민원과 민원팀장 · 민원과 민원팀장 · 민원과 민원팀장 · 민원과 가족관계등록팀장 · 교통과 차량등록팀장 · 민원과 지적정보팀장 · 민원과 지적정보팀장
직속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 직인(직속기관전용) · 직속기관장 직인 및 계인 · 직속기관장 직인(민원실전용) · 직속기관장 직인(민원실인증기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속기관 주무팀장
사업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소장 직인 · 사업소계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소 주무팀장
읍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 직인(읍면동장전용) · 읍·면·동장 직인 및 계인 · 읍·면·동장 직인(민원실전용) · 읍·면·동장 직인(민원실인증기전용) · 읍·면·동장 직인(민원실통합기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동 주무팀장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 관계공무원의 공인 · 기타공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의 회계업무 팀장 · 관련업무 팀장

[별지 제1호서식]

공인인영사용신청서

1. 공인명		2. 제판규격	원형(), 축소()
3. 사용목적			
4. 관계법령			
5. 인쇄수량		6. 인쇄업체	
7. 사용기간		8. 반납예정일	
9. 입회자	직급	성명	(서명)

「삼척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인영 인쇄 사용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직위)

(성명)

(서명)

총무과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

인쇄문서명					
공인명			인쇄공인규격		
년월일	인쇄량 (매)	사용량 (매)	사용내역	잔여량 (매)	확인 (서명)

[별지 제3호서식]

직 인 날 인 기 록 부

년월일	등록 번호	발신	수신	제목	부수	날인자		확인자 (관수자)
						부서명	성명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공인관수자의 임명) 「삼척시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류별 공인의 관수자를 별표와 같이 임명한다.</p>	<p>제2조(공인관수자) ----- ----- ---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인의 종류별 관수자는 별표와 같다.</p>
<p>제3조(공인의 날인) ① (생략)</p> <p>② 인·허가증명 기타 중요한 문서는 결재문서 또는 대장과 시행문간에 계인을 날인하고 시행문이 2매 이상일 때에는 직인으로 간인한다.</p> <p>③ (생략)</p> <p>④ 민원실전용공인은 민원서류에만, 읍·면·동장 또는 사업소, 출장소용 시장인은 시 사무내부위임 사무처리에 한하여 날인한다. 다만, 청구즉결 민원서류에 대하여는 인증기 전용공인을 날인할 수 있다.</p>	<p>제3조(공인의 날인) ① (현행과 같음)</p> <p>② 인가·허가, 증명 등과 그 밖의 ----- 직인----- -----, ③ (현행과 같음)</p> <p>④ 민원실전용공인은 민원서류에만 날인하고, 직속기관과 사업소, 읍·면·동 전용 시장인은 삼척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과 삼척시 사무위임 규칙에 따른 사항에 한하여 날인한다. -----, -----,</p>
<p>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p>	<p>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① ----- 사용빈도가 잦은 민원서류와 그 밖의 -----</p>

는 직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문서처리과장의 결재를 받아 인영 인쇄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문서처리과장은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 유지하여 인쇄용지가 목적 외에 사용되거나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인쇄를 할 때에는 처리과장이 지명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하여 인영사고와 부정 등을 감시토록 하며, 인쇄를 끝마쳤을 때에는 즉시 공인의 인영과 인영원판을 회수하여 공인 관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5조(직인날인의 기록유지) 기록

-- 사전에 공인을 날인하거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

② 제1항에 따라 -----
-----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인영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
---- 받아야 --.

③ -----

-----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
-- 비치하여 ----- 기록
· 유지하고 -----
-----.

④ ----- 문서처리과장이 미리 지명한 공무원이 인쇄 현장에 입회하여 인영 사고-----
----- 감시하고-----
----- 회수한 후 -----

제5조(직인의 날인 기록유지) ---

물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직인날인 시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직인날인기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6조(관수방법) ① 공인은 공인 관수자의 책임 하에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에는 당직책임자를 공인 관수자로 한다.

②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에 직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직인날인기록부에 등재하고 당직책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재택당직을 할 경우 공인은 공인 관수자가 공인함에 넣어 봉합하고 이를 이중 금고에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 문서에 직인을 날인하는 경우-----
-----.

제6조(관수방법) <삭 제>

<삭 제>

<삭 제>

[붙임 2]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자치법규명 : 「삼척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의견제출자 :

개정안	검토의견서	
	수정안	검토사유

삼척시 공고 제2024-538호

「삼척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9일

삼척시장

삼척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의 개정(시행 2024. 2. 17.)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 및 표준조례안에 부합하게 내용 및 용어, 자구 등을 수정하여 조례의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 및 목적(안 제1조)

나. 조례의 용어 정비(안 제3조)

다. 재해위험개선지구 유형 정비(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 현행 2개 유형(침수, 붕괴)에서 5개 유형(유실, 고립, 취약방재, 해일, 상습가뭄)을 추가하여 7개 유형으로 정비하고 유형별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내용 추가

라. 그 밖에 용어 및 자구 수정

3. 의견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4월 22일까지 작성하여 삼척시장(재난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및 문의처

- 1) 주소 : (우)25914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재난안전과
- 2) 전화 : 033-570-3885
- 3) 팩스 : 033-570-3178

4. 그 밖의 사항

이 조례안은 삼척시 홈페이지(<http://samcheok.go.kr>) 입법 / 공고 / 고시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붙임 1. 삼척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1부. 끝.

[붙임 1]

삼척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삼척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를 “삼척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 제3항”을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으로,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하고,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 제한에 필요한”을 “건축·형질 변경 등의 행위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으로 한다.

제2조 중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해일위험지구”를 “해일위험지구, 상습가뭄재해지구”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침수위험지구 등”이”를 ““침수위험지구””로, “침수 및 유실”을 “침수”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10호 및 제1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호(종전의 제7호) 중 “자연재해로 인하여”를 “집중호우 및 태

풍 등 강우 발생이 집중적으로 발생하여”로, “붕괴 등으”를 “붕괴”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3호(종전의 제8호) 중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로 한다.

7. “유실위험지구”라 함은 집중호우 및 태풍, 해일 등 내습 시 하천 수위상승 및 내수배제 불량, 해일로 인해 하천 및 해안가의 시설물 유실 등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8. “고립위험지구”라 함은 집중호우 및 태풍, 폭설 등 내습 시 하천 수위상승, 폭설로 인하여 잠수교, 교량, 도로 등 마을로 진·출입하는 교통 기반시설 등의 통행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9. “취약방재시설지구”라 함은 저수지·댐, 제방, 배수문, 유수지, 저류지, 사방댐 등 방재시설에 대한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침수, 붕괴, 고립 등의 복합적인 위험요인으로 종합적인 정비가 필요한 지역의 시설을 말한다.
 11. “해일위험지구”라 함은 태풍, 해일, 조위 상승, 너울성 파도 등으로 인해 해안가 지역에 있는 시설물의 침수나 유실 등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12. “상습가뭄재해지구”라 함은 연간 강수량 저조에 따른 용수공급 부족으로 인해 제한급수 및 상습적인 가뭄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말한다.
- 제4조의 제목 “(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을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추진코자 하는”을 “추진할”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을 “자연재해위험지구개선지구 내”로, “자연재해위험지구의”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을 “(침수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침수위험지구 등”을 “침수위험지구”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침수 및 유실 등”을 “침수위험지구에서”로, “침수 피해”를 “피해”로, “성토 및 정지 작업”을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다.

제8조를 제11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8조) 제1항제3호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하며,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유실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유실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교량, 세월교, 암거 등 유실 피해 유발 구조물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교량, 세월교, 암거 등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유실위험지구에서의 위험 해소 및 유실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제9조(고립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고립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고립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고립피해 유발시설 정비, 대피로 확보 및 대피 시설 설치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고립위험지구에서의 위험 해소 및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

질변경

제10조(취약방재시설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취약방재시설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취약방재시설물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취약방재시설물의 보수·보강 및 재 건설 등 재해예방 사업을 건축 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취약방재시설지구에서의 위험 해소 및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제12조(해일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해일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지진해일, 조위 상승, 너울성 파도 등으로 해수가 월류되더라도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해일피해 우려지역의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내에서의 건축 행위

-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 4. 해일위험지구에서의 위험 해소 및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제13조(상습가뭄재해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상습가뭄재해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 1. 상습적인 가뭄이 발생하더라도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 2. 상습가뭄재해지구에서의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내에서의 건축 행위
-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 4. 상습가뭄재해지구에서의 위험 해소 및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별법에 따라 인가, 허가 등 행정 처분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받지 아니한다.

[별표 1] 침수위험지구 등의 표지판 (제6조제1항 관련)

안내판 예시	안내판 설치 요령		
<div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yellow;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침수위험지구) </div>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 padding: 5px;"> 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td> <td style="width: 50%; padding: 5px;">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삼척시청, T. 033-570-3886) 삼척시장 </td> </tr> </table>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margin-top: 20px;"> <div style="margin-right: 10px;">침수위선(척색) →</div>  <div style="margin-left: 10px;">문자로 침수위선 표기</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margin-top: 10px;"> <div style="margin-right: 10px;">침수흔적(청색 삼각형)</div>  <div style="margin-left: 10px;">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div> </div>	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삼척시청, T. 033-570-3886) 삼척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색상: 안내판(어두운 노랑), 글씨(검정), 침수위선(빨강) ○ 안내판 규격: 가로 1.2미터 세로 1미터 내외 ○ 기둥 규격: 지름 10센티미터로 바닥에서 안내판 하단까지 2미터 이상 ○ 색상: 안내판(어두운 노랑), 글씨(검정), 침수위선(빨강) 등은 10센티미터 간격으로 노랑색과 검정색(예시 참조)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제작할 것 ○ 재질: 안내판 및 기둥은 철 또는 알루미늄이나 이와 유사한 재질로 함 ○ 침수위선 표기: 1센티미터 두께의 빨강색으로 기둥에 원형 표시(예시 참조) ○ 침수흔적 표기: 청색 삼각형과 문자로 표기 (예; ▶ 태풍루사, 2002) ○ 설치장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주민들의 눈에 잘 띄는 곳 ○ 설치개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범위를 고려하여 적정량 설치
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삼척시청, T. 033-570-3886) 삼척시장		

[별표 2]붕괴위험지구의 표지판 (제6조제2항 관련)

안내판 예시	안내판 설치 요령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background-color: #ffff00;"> <p style="text-align: center;">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붕괴위험지구)</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45%;"> <p>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45%;"> <p>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 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삼척시청, T. 033-570-3886) 삼척시장</p> </div> </div>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내판 규격: 가로 1.2미터 세로 1미터 내외 ○ 기둥 규격: 지름 10센티미터로 바닥에서 안내판 하단까지 2미터 이상 ○ 색상: 안내판(어두운 노랑), 글씨(검정), 붕괴위험지역 범위(빨강) 기둥은 노랑색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제작할 것 ○ 재질: 안내판 및 기둥은 철 또는 알루미늄이나 이와 유사한 재질로 함 ○ 설치장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주민들의 눈에 잘 띄는 곳 ○ 설치개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범위를 고려하여 적정량 설치

[붙임 1]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u>삼척시 자연재해위험지구</u> <u>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u>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기본방향) <u>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u>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시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p> <p>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u>자연재해위험지구</u>”라 함은 「<u>자연재해대책법</u>」(이하 “<u>법</u>”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p>	<p><u>삼척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 <u>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u> ----- <u>건축·형질 변경 등의 행위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u> -----.</p> <p>제2조(기본방향) <u>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u> ----- ----- ----- -----.</p> <p>제3조(용어의 정의) ----- ----- -----.</p> <p>1. “<u>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u>”--- ----- -----</p>

따른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 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 5. (생략)

6. "침수위험지구 등"이라 함은 집중 호우 및 태풍, 해일 내습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신설>

 ----- 해일 위험지구, 상습가뭄재해지구
 -----.

2. ~ 5. (현행과 같음)

6. "침수위험지구"-----

 -- 침수 -----

 --.

7. "유실위험지구"라 함은 집중 호우 및 태풍, 해일 등 내습시 하천 수위상승 및 내수배제 불량, 해일로 인해 하천 및 해안가의 시설물 유실 등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8. "고립위험지구"라 함은 집중 호우 및 태풍, 폭설 등 내습시 하천 수위상승, 폭설로 인하여 잠수교, 교량, 도로 등 마을로 진·출입하는 교통 기반 시설 등의 통행이 불가능한

<신 설>

7. "붕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 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신 설>

<신 설>

지역으로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9. "취약방재시설지구"라 함은 저수지·댐, 제방, 배수문, 유수지, 저류지, 사방댐 등 방재 시설에 대한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침수, 붕괴, 고립 등의 복합적인 위험요인으로 종합적인 정비가 필요한 지역의 시설을 말한다.

10. ----- 집중호우 및 태풍 등 강우 발생이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 붕괴-----

11. "해일위험지구"라 함은 태풍, 해일, 조위 상승, 너울성 파도 등으로 인해 해안가 지역에 있는 시설물의 침수나 유실 등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12. "상습가뭄재해지구"라 함은 연간 강수량 저조에 따른 용수공급 부족으로 인해 제한급수 및 상습적인 가뭄피해가

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①·② (생략)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
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
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
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
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
는 성토 및 정지 작업

<신 설>

-----,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
지판 설치) ①·② (현행과 같
음)

제7조(침수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

4. 침수위험지구에서-----
-- 피해-----
-- 토지의 형질변경

제8조(유실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유실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
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교량, 세월교, 암거 등 유실

피해 유발 구조물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교량, 세월교, 암거 등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유실위험지구에서의 위험 해소 및 유실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제9조(고립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고립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신 설>

1. 고립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고립피해 유발시설 정비, 대피로 확보 및 대피 시설 설치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 등의 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고립위험지구에서의 위험 해소 및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신 설>

제10조(취약방재시설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취약방재시설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1. 취약방재시설물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취약방재시설물의 보수·보강 및 재 건설 등 재해예방 사업을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 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 등의 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취약방재시설지구에서의 위험 해소 및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제11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 2. (생략)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행위

4. (생략)

② (생략)

<신설>

--.

1. · 2. (현행과 같음)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해일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해일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

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지진해일, 조위 상승, 너울성

파도 등으로 해수가 월류되더

라도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

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

축 행위

2. 해일피해 우려지역의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공사를

<신 설>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내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 등의 재해예방사업이 미
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재
해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해일위험지구에서의 위험 해
소 및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제13조(상습가뭄재해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상습가뭄재해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상습적인 가뭄이 발생하더라
도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
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상습가뭄재해지구에서의 피

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내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상습가뭄재해지구에서의 위험 해소 및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붙임 2]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자치법규명: 「삼척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인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견제출자:

개정안	검토의견서	
	수정안	검토사유

삼척시 공고 제2024 - 546호

2024년 임도신설사업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24년 임도신설사업 편입토지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소재지 불분명 등의 사유로 동의를 얻기 어려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22조, 동법 시행규칙 25조,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03. 27.

삼척시



1. 사업명 : 2024년 임도신설사업(원덕 노경)
2. 위치 : 삼척시 원덕읍 노경리 산5, 산11
3. 사업량 : 0.25km
4. 사업기간 : 2024년 4월 ~ 2024년 10월
5. 편입토지 : <별첨>참조
6. 공고기간 : 2024.03.27. ~ 2024.04.15.(공고일로부터 20일간)
7. 기타사항
 - 본 임도개설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사후 지목변경 및 소유권의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토지 및 임목보상이 없으며, 재산권행사 및 사후 관리에 일체의 피해가 없으며 사업비 부담도 없습니다.
 - 본 토지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동의여부 등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 산림과 자원조성팀(033-570-342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 필지별 내역

구분	지번 내역						소유자		비고
	읍면 동	리	지번	지 목	지적 (㎡)	환입 면적 (㎡)	주 소	성명	
간선 임도	원덕	노경	산5	일	12,198	680	원덕읍 노경리 155	이*익	
간선 임도	원덕	노경	산11	일	54,540	3,630	원덕읍 노경리 33	심*섭	

삼척시 공고 제2024-551호

「삼척시 현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8일

삼척시장

삼척시 현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기존 조례의 적용 대상에 인체조직 기증까지 포함시켜 확대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목적 및 관련 용어 등을 개정하고,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생명 나눔의 일환인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명,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정비(안 제1조~제2조)
- 나.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자와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12조)
- 다. 그 밖에 조례의 명확성, 간결성을 위하여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자구 등을 수정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장(보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및 문의처

- 1) 주소: (우)25920 삼척시 중앙시장길 53-6, 삼척시보건소 보건정책과
- 2) 전화: 033-570-4647
- 3) 팩스: 033-570-4169

4. 그 밖의 사항

이 조례안은 삼척시 홈페이지(<http://samcheok.go.kr>) 입법/공고/고시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붙임 1. 삼척시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서식 1부. 끝.

[붙임 1]

삼척시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삼척시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를 “삼척시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의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장기기증 장려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건강한을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활동”이란”으로, “장기기증정신”을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정신”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장기등”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인체조직”이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자”란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 5. “장기등·인체조직 기증희망자”란 장기등·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중 “장기기증을 장려하는데 적극 협조하고”를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활동을 적극 추진하여”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장기기증 장려사업”을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로, “장기기증 장려사업계획”을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장기기증”을 각각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장기기증 장려사업의 재원”을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의 재원 및”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장기기증”을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그 연도”를 “해당 연도”로, “장기기증”을 “장기등·인체조직”으로, “다음연도”를 “다음 연도”로 한다.

- 3.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의 제목 “(위원회 설치)”를 “(위원회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

목 외의 부분 중 “장기기증의 범 시민장려”를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을 장려하기”로,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를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운동추진위원회”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위원회 기능)”을 “(위원회의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장기기증운동”을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운동”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장기기증등록기관”을 “장기등·인체조직 기증등록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장기기증운동”을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운동”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장기기증”을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위원회 구성)”을 “(위원회의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구성 한다”를 “구성하되, 위원장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 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시 보건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장기기증”을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시 관내”를 “관내”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위원이 다음”으로, “전이라도”를 “전이라도 해당”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위원회 운영)"을 "(위원회의 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원장 또는"을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로, "요구할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을 "요구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 회의"를 "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회에"를 "회의에"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접수 및 등록창구의 설치) 시장은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신청의 접수를 위하여 보건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민원실에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고, 기증 신청의 등록 및 전산 관리를 위하여 보건소에 등록창구를 설치한다.

제12조의 제목 "(장기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예우 및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기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기증자 및"을 "장기등·인체조직 기증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자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 중 "보건소 및 지소, 진료소"를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3호 및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시가 설치·운영하는 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 등 감면

4.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이하 “위로금”이라 한다) 지급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위로금의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로금의 지급 대상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의 뇌사 장기기증자 지원금 및 인체조직 기증자 지원금의 지원대상으로 한정한다.

2. 위로금의 신청 자격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호 각 목의 순에 따른다.

3. 위로금은 기증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기증자의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보건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4. 위로금은 한차례만 5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중 “장기기증 장려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을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u>삼척시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혈액관리법</u>」 제4조제3항 및 「<u>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u>」 제6조에 따라 <u>헌혈 및 장기기증의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헌혈정신 및 장기기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u>헌혈 및 장기기증 장려활동</u>"이란 「<u>혈액관리법</u>」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 「<u>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u>」 제6조에 따라 건강한 주민을 대상으로 헌혈 및 장기기증정신을 고취하여 수급</p>	<p><u>삼척시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삼척시의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정의) ----- ----- ----- -----</p> <p>1. ----- <u>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활동</u>"이란 ----- ----- ----- ----- <u>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정신</u>-----</p>

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을 말한다.

2. "장기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3. "장기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기증 등록창구"란 장기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삼척시 보건소 (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말한다.

5. "장기기증 접수창구"란 기증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

-----,

2. "장기등"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인체조직"이란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자"란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장기등·인체조직 기증희망자"란 장기등·인체조직을 기

여 등록창구로 이첩하기 위하여 설치한, 보건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민원실 창구를 말한다.

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헌혈 및 장기기증을 장려하는데 적극 협조하고 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
-----.

제4조(장려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헌혈 및 장기기증 장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헌혈 및 장기기증 장려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장려사업계획의 수립) ① -----
-----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 -----
-----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

1. 헌혈 및 장기기증 장려사업의 기본 방향
 2. 헌혈 및 장기기증에 관한 교육·홍보와 상담에 관한 사항
- <신 설>

1. -----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
2. -----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3.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3. 헌혈 및 장기기증 장려사업
의 재원과 문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 및 장기기증 장려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그 연도의 헌혈 및 장기기증 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장기
기증의 범 시민장려를 위하여
삼척시 헌혈 및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헌혈 및 장기기증운동의 기본정책
2.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기관과의 협력사항
3. 헌혈 및 장기기증운동 홍보

관한 사항

4. -----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의 재원 및 ---
--

5. ----- 장기등·인체
조직 기증 -----

③ ----- 해당 연도-----
장기등·인체조직 -----

다음 연도 -----
-----.

제5조(위원회의 설치) ---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을 장
려하기----- 장기등·인체조
직 기증운동추진위원회-----
-----.

제6조(위원회의 기능) -----
-----.

1. -----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운동-----

2. ----- 장기등·인체조직 기
증등록기관-----

3. ----- 장기등·인체조직

사항

4. 그 밖에 헌혈 및 장기기증 장려와 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1. · 2. (생략)
- 3. 헌혈 및 장기기증 단체 임원, 종교단체 지도자
- 4. 시 관내 기업체 대표, 언론인, 체육인 및 예술인
- 5. 장기기증자이거나 장기기증 희망자

기증운동 -----

--

4. -----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

--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

구성하되, 위원장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시 보건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1. · 2. (현행과 같음)
- 3. -----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
- 4. 관내 -----
-
- 5.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2. (생략)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생략)

④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장기기증 등록·접수창구 설치) 시장은 장기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기증 등록 창구를 설치하고, 보건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장

제8조(위원의 해촉) ----- 위원이 다음 ----- 전이라도 해당 -----.

1. 2.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 요구하는 경우 -----.

② 회의-----

③ (현행과 같음)

④ 회의에 -----.

제11조(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접수 및 등록창구의 설치) 시장은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신청의 접수를 위하여 보건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민원

기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장기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시장은 장기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건소 및 지소, 진료소의 진료비 면제

2. (생략)

<신설>

<신설>

3. (생략)

<신설>

실에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고, 기증 신청의 등록 및 전산관리를 위하여 보건소에 등록창구를 설치한다.

제12조(예우 및 지원) ① -----
----- 장기등·인체조직 기증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자와 -----.

1.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2. (현행과 같음)

3. 시가 설치·운영하는 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 등 감면

4.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이하 "위로금"이라 한다) 지급

5.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위로금의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로금의 지급 대상은 국립 장기조직혈액관리원의 뇌사 장기기증자 지원금 및 인체조직 기증자 지원금의 지원대상

제13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라 헌혈 및 장기기증 장려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으로 한정한다.
 2. 위로금의 신청 자격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호 각 목의 순에 따른다.
 3. 위로금은 기증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기증자의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보건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4. 위로금은 한차례만 5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의 유지) -----
 -----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

 --.

[붙임 3]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자치법규명 : 『삼척시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삼척시 공고 제2024-555호

2024년 도시녹지관리원 모집공고

삼척시 산림과에서 2024년 도시녹지관리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29일

삼척시장

1. 공고 개요

- 공 고 명 : 2024년 도시녹지관리원 모집공고
- 공고기간 : 2024. 03. 29. ~ 04. 04.
- 모집인원 : 2명
- 작업내용
 - 도시녹지에 대한 사후관리
 - 가로수 실태조사 등 도시녹지 자원조사, 병해충 등 피해 조사
 - 도시녹지 실태조사 및 사업실행 이력 등 정보 구축·관리
 - 도시녹지 관련 시스템 등 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행정업무 지원
 - 병해충방제, 피해목·고사목 정리, 가지치기 등

2. 신청 접수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접수기간 및 시간 : 2024. 03. 29. ~ 04. 04. (09:00 ~ 18:00)
- 접수처 :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산림과 녹지부서(별관 3층)
 - ※ 신청서는 공고문의 신청서 서식을 인쇄하여 사용
 - ※ 인터넷·대리 접수 불가
 - ※ 점심시간, 토·일요일 접수 불가

3. 제출서류

- ① 신청서 1부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마동의 시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 제출)
- ③ 주민등록등본 1부
- ④ 기술교육 이수증 및 자격증 사본, 증명서(해당 대상자에 한함)
- ⑤ 채용신체검사서 1부(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이행

⇒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한다(채용 확정자는 제외)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이행

⇒ 구직자의 반환 청구기간(채용 확정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채용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함.

4. 신청자격 및 우대조건

- 연령제한 :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
- 지역제한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가 삼척시로 되어 있는 자
- 자격조건
 - 산림분야(조경 포함) 자격증 소지자, 조경수조성관리사 민간자격 취득자, 임업훈련기관에서 기술교육 이수자
 - 입업·조경 관련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졸업 예정자 포함)
 - 관련 업종에 종사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자(영리단, 숲가꾸기 공공근로 등 경력자 포함)
 - 기타 도시녹지관리원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취업취약계층 우선 선발

참고	취업취약계층 범주
① 저소득층(기준중위소득 65%, 1인가구 120% 이하), ② 장애인 ③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청년은 재학생이 아니면서 고용된 사실도 없는 자), ④ 결혼이민자 ⑤ 여성기장, ⑥ 성매매피해자 ⑦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⑧ 북한이탈주민 ⑨ 위기청소년 ⑩ 갱생보호대상자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⑫ 노숙자	

5. 신청자격의 제한(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 참여 불가)

- 작업에 장애(청각, 간질, 정신질환 등)가 있는 사람
- 고교·대학(이하 “2년제·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 한다”) 재학생
(단, 야간대학생 및 6개월 이상 장기 휴학생은 제외)

- 직접일자리사업 중복 참여의 제한
 - 전일제 사업에 하나라도 참여할 경우, 다른 사업과 참여일이 겹칠 경우 중복 참여 불가능
 - 시간제·간헐적 사업의 경우 시간대가 중첩되지 않을 경우 중복 참여 가능하나, 동일한 기간에 3개 이상의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시간이 겹치지 않아도 중복참여로 간주)
- 1세대 2인 이상의 신청자(세대당 1인만 가능)
- **3년 이내에 2년 이상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자**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1년 참여자로 간주하되, 참여일수는 참여기간 중의 주말, 공휴일, 병가일, 휴가일, 경조일, 훈련일 등 모두 포함하여 계산
 - 참여일수는 해당연도 내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의 모든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일수를 합하여 계산
- **반복 참여가 허용되는 경우의 자**
 - 65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근로능력, 질병 정도 등에 따라 반복참여를 허용 할 상당할 사유가 있는 자
(단, 만 65세 이상자 중 최근 3년간 3회 이상 반복참여자의 경우 선발 총점의 5%이상을 감점)
 - 참여자 모집을 위한 최초 공고 이후 참여자 부족으로 재공고를 하는 경우 반복참여자라 하더라도 선발 총점의 20% 이상 감점하여 선발 과정 진행 가능

6. 근무조건

- 사업기간 : 2024. 04월 중 ~ 12. 31.(기간 중 예산범위 내)
- 임 금 : 78,880원/일(주차 및 월차수당 별도 지급)
- 근로시간 : 1일 8시간, 주5일, 40시간(사정에 따라 근로시간 변동 가능)
- 근무장소 : 삼척시 관내
-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 사용자 4대 보험 의무가입 조치(본인 부담금 급여 공제)
- 사업기간 중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함
 - ※ 교육훈련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제2호에 준하여 지급

7. 합격자 결정방법

- 1차 시험(서류 심사) : 제출서류 및 우대조건을 토대로 심사
- 2차 시험(실기 및 면접) : 서류 심사 합격자(개별 유선 통보)
 - ① 기계톱 장비의 사용 여부 확인
 - ② 건강진단서 확인(작업에 어려움 있는 자 제외)
 - ③ 사업수행 의지 및 태도 평가

8. 기타사항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에 한하며,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 신청자는 신청자격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까지의 출·퇴근은 개별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 **본인 소유의 차량으로 임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유류비 지원 없음)**
- 상습적인 결근, 지각, 조퇴를 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사업 참여를 제한합니다.
- 위의 제시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2024년도 제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 지침에 따릅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산림과(전화 570-342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신청서 1부. 끝.

도시녹지관리원 참여 신청서

접수번호				(신청일자 : 2024. . .)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수신동의여부	① 동의 ② 비동의
핸드폰번호			수신동의여부	① 동의 ② 비동의
타 일자리사업 참여제의를 위한 SMS 수신 동의 여부 * 일모아시스템의 다른 일자리사업에서 신청자 부족으로 참여자 선발이 어려운 경우 귀하의 연락처로 참여제의 문자 발송				① 동의 ② 비동의
세대주 여부	① 해당 ② 해당없음		세대원수(세대주, 동거인제외)	명
취업취약계층 여부	<input type="checkbox"/> 결혼이민자 <input type="checkbox"/> 여성가장 <input type="checkbox"/> 성매매피해자 <input type="checkbox"/> 북한이탈주민 <input type="checkbox"/> 위기청소년 <input type="checkbox"/> 경생보호대상자 <input type="checkbox"/>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input type="checkbox"/> 노숙인			
취업 여부	① 취업 ② 실업 ③ 취업경험 없음		이전 직업	
실업기간	20 ~ 20			
주요 경력	직장명		담당업무	재직기간
				~
				~
자격증 또는 관련 교육 이수 여부	자격증 / 교육 명		취득 / 수료시점	
참여 희망지역 (작업공정 등)	①	②	③	
현재 참여 중인 정부지원사업	사업명(), 시행기관명(), 참여기간(20 ~ 20)			
참여 희망사업	①		②	
구직등록여부	① 등록 ② 미등록	사업참여 종료 후 구직지원 프로그램 참여 희망 여부		① 희망 ② 희망하지 않음

- ❑ 본 신청서는 _____ 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내지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편)
-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할 경우 불이익(_____ 사업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제 1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관리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항목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차가능한 전차번호,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및 휴대전화번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및 휴대전화번호	참여자 선정종료시
선택항목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족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참여자 선정종료시
취업취약 계층항목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족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동의일로부터 10년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부과액	참여자 선정종료시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및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등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 유형정보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제공일로부터 6개월 (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른)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불이익(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1.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20 년 월 일

삼척시장 귀하

[제 2호 서식]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

본인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요구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

본인 정보					
보유기관	명칭	항목	보유기관	명칭	항목
(작성예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본	성명, 주민번호, 세대원정보(세대원 성명, 세대원관계, 변동일, 주민번호)	보건복지부	장애인증명서	성명, 주민번호, 장애인등록번호, 장애등급, 장애등급부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성명, 주민번호, 수급자구분	보건복지부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성명, 주민번호, 차상위대상자번호, 차상위대상자책정일
보건복지부	한부모가족증명서	성명, 주민번호, 등록번호, 세대주와 관계, 선정일자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국가기술자격확인서	성명, 주민번호, 자격증명, 자격취득일자
보건복지부	자활근로확인서	성명, 주민번호, 세대주성명, 참여구분	국세청	소금액증명서	성명, 주민번호, 과속년도, 소득구분, 소득금액
보건복지부	차상위계층확인서	성명, 주민번호, 대상자성명, 대상자생년월일, 세대주성명	보건복지부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성명, 주민번호, 기주소득입액, 가입시작기간, 연월일

제3자		
이용기관	제공목적	보유기간
<u>한국고용정보원</u>	<u>재정지원일자리 선발 업무</u>	재정지원일자리 선발/완료 후 5년까지 보유/이용 ※제공 요구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 이용됩니다.

※ 귀하는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제공 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목적정보 제공 목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자정부법」 제43조2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요구를 하시겠습니까?

예		아니오	
---	--	-----	--

※ 신청자 별 이용하는 마이데이터 항목에 따라 본인정보 항목 부분 삭제 가능 (항목내용 수정/추가 불가능)

[제 3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한국고용정보원은 귀하가 지원한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에 개인정보를 수집 및 활용하여, 재정지원 일자리 선발에 필요한 정보연계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본인식별 및 재정지원일자리 선발을 위한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 목적 달성 후 즉시 삭제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재정지원일자리 신청에 필요한 데이터 연계요청 및 결과를 제공 받으실 수 없으며, 사업담당자가 위 항목을 직접제출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선택항목 동의	(서명)	미동의	(서명)
---------	------	-----	------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성명	본인식별 및 재정지원일자리 선발을 위한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 목적 달성 후 즉시 삭제

* 위의 고유식별정보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따라 수집·이용되며,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일모아시스템 서비스에 대한 신청 자격 확인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일모아시스템 연계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서명)	미동의	(서명)
----	------	-----	------

[제 4호 서식]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한국고용정보원은 아래의 제공 목적을 위하여 표에 열거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제공받는 자	제공 항목	제공 목적	보유기간
신용정보 기관(SCI신용정보)	<u>주민등록번호</u>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를 위한 CI값 변환	수집·이용 목적 달성 후 즉시 삭제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공공 마이데이터를 수집할 수 없어 서비스의 신청 및 결과를 제공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서명)	미동의	(서명)
----	------	-----	------